
FERPA Disclosure in Tuition Billing Statement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is a federal law that affords students the right to have access to their education records, the right to seek to have the records amended, and the right to have some control over the disclosure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the education records. When a student turns 18 years old or enters a postsecondary institution at any age, the rights under FERPA transfer from the parents to the student ('eligible student'). The FERPA statute is found at 20 U.S.C. § 1232g, and the FERPA regulations are found at 34 CFR Part 99.

As mentioned in SUNY Korea student handbook Part 4 under FERPA, University officials will only release educational and any other student's information upon receipt of a signed, dated, and written consent of the student, which must specify the records that may be disclosed and identify the party to whom the disclosure may be made.

미국의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리, 그리고 교육 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연방 법입니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면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는 부모로부터 학생('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의 법령은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 (20 U.S.C. § 1232g)에 있으며, 그 규정은 미국연방규정 제34편 제99조 (34 CFR Part 99)에 있습니다.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학생 핸드북 파트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서명이 되고, 날짜가 기재된 서면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며, 학생의 서면 동의서에는 공개될 수 있는 기록과 누구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